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급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76
----------	-----

제출일자 : 2010. 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 1. 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교육감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2. 제정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사항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구분기준표에 따름)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나.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입법예고의 예외)
- 다.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법령
- 라. 교육규제 : 신설·강화 규제 해당없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별 구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지급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

1. 도서

<가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인천주안남초등학교승봉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인천용현남초자월분교장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인천용유초등학교무의분교장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해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삼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삼산승영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덕적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덕적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덕적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인천공항초등학교신도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인천삼목초등학교장봉분교장

2. 벽지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영흥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영흥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영흥초등학교선재분교장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장

3. 접적

<가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대청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대청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대청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대청초등학교소청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북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백령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백령종합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백령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고등학교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난정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교동초학교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교동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교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지석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서도초등학교불음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서도중학교불음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서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서도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서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송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서사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양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하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강서중학교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국화리학생야영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대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내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삼량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삼량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선원초등학교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갑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초등학교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강화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덕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합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불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삼성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명신초등학교

[참고]

## 관계법령 발췌서

###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9.8]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9.8, 타법개정]

####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향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1057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의2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7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별표 7] <개정 2009.4.30>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

(월 지급액, 달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대상	급지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이하삭제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 가지역: 39점 이상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미만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 나지역: 31점 이상 38점 이하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 다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 라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급 구분 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가지역 : 31점 이상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나지역 : 23점 이상 30 점 이하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다지역 : 15점 이상 22 점 이하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라지역 : 14점 이하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 사용	상시 급수 지원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	-------------------	-------------	-----------------	-----------	--	--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連陸橋), 연도교(連島橋)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3. 접적지역

가 지 역	비무장지대
나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다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라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87호, 2009.3.31, 일부개정]

###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부칙 <제20996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제5조 (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7.3.2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4호, 2007.3.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904호,2007.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7.3.21>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제2조관련)

1. 도서

<가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

<나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옹진군	무의동	인천용유초등학교무의분교장
		영흥면 선재리	영흥초등학교선재분교장
		자월면 승봉리	인천주안남초등학교승봉분교장
		자월면 자월리	인천용현남초등학교자월분교장

<다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강화군	운북동	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장
		삼산면 석모리	삼산승영중학교
		삼산면 석모리	삼산초등학교
	옹진군	삼산면 매음리	해명초등학교
		덕적면 진리	덕적초등학교
		덕적면 진리	덕적중학교
		덕적면 진리	덕적고등학교
		영흥면 내리	영흥초등학교
		영흥면 내리	영흥중학교
		북도면 장봉리	인천도화초등학교장봉분교장
		북도면 신도리	인천신흥초등학교신도분교장

<라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운서초등학교
		운서동	인천과학고등학교
		운서동	인천교육연수원
		운서동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남북동	인천용유초등학교
		남북동	용유중학교
		중산동	인천영종초등학교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운남동	영종중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 2. 벽지

### <다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홍왕체험 학습장)

### <라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해양환경 탐구수련원)

## 3. 접적

### <가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초등학교
		연평면 연평리	연평중학교
		연평면 연평리	연평고등학교
		백령면 진촌리	백령초등학교
		백령면 북포리	백령중학교
		백령면 북포리	백령종합고등학교
		백령면 가을리	북포초등학교
		대청면 대청리	대청초등학교
		대청면 대청리	대청중학교
		대청면 대청리	대청고등학교
		대청면 소청리	대청초등학교소청분교장

<나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강서중학교
		하점면 신봉리	하점초등학교
		양사면 교산리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서사체험 학습장)
		양사면 덕하리	양사초등학교
		송해면 솔정리	송해초등학교
		교동면 대룡리	교동중학교
		교동면 대룡리	교동고등학교
		교동면 대룡리	교동초등학교
		교동면 삼선리	지석초등학교
		교동면 난정리	난정초등학교
		서도면 주문도리	서도고등학교
		서도면 주문도리	서도중학교
		서도면 주문도리	서도초등학교
		서도면 불음도리	서도중학교불음분교장
		서도면 불음도리	서도초등학교불음분교장

<다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대월초등학교
		강화읍 관청리	강화초등학교
		강화읍 관청리	강화중학교
		강화읍 관청리	강화여자고등학교
		강화읍 관청리	강화여자중학교
		강화읍 갑곶리	갑룡초등학교
		강화읍 신문리	합일초등학교
		강화읍 국화리	강화고등학교
		강화읍 국화리	덕신고등학교
		강화읍 국화리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국화리학생야영장)
		선원면 냉정리	선원초등학교

<라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하점면 망월리	명신초등학교
		불은면 두운리	불은초등학교
		불은면 삼성리	삼성초등학교
		내가면 고천리	삼량중학교
		내가면 고천리	삼량고등학교
		내가면 고천리	내가초등학교